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0. 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4. 9. 30.
다. 상정일자: 제2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4. 10. 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가. 제안이유

민선8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국·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 등 개정(안 제3조~안 제11조)

- 국 신설: 교육체육국, 환경녹지국(안 제3조)
- 행정지원국(안 제4조)
 - 소관 국 변경: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국 → 교육체육국
- 복지동행국(안 제5조)

- 신 설: 실뿌리복지과
 - 명칭변경: 장애인사회보장과 → 장애인복지과,
가족행복지원과 → 가족정책과
 - 소관 국 변경: (아동보육과) 복지동행국 → 교육체육국
- 교육체육국(안 제6조)
- 신 설: 평생학습과
 - 명칭변경: 교육정책과 →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 보육정책과
 - 소관 국 변경: (체육진흥과) 관광경제국 → 교육체육국
- 관광경제국(안 제7조)
- 소관 국 변경: (체육진흥과) 관광경제국 → 교육체육국
- 환경녹지국(안 제9조)
- 소관 국 변경: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도시환경국 → 환경녹지국
- 도시관리국(안 제10조)
- 국 명칭 변경: 도시환경국 → 도시관리국
 - 소관 국 변경: (부동산정보과) 교통건설국 → 도시관리국
- 교통건설국(안 제11조)
- 소관 국 변경: (부동산정보과) 교통건설국 → 도시관리국

다.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제13조
- 입법예고 : 2024. 9. 12. ~ 9. 18. 결과: 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민선8기 후반기 핵심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으로 ‘새롭고 더 좋은 마포’ 구현 및 업무 기능이 중복·유사한 부서·팀 통합으로 인한 인력 재배치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안 제11조)에 국 신설 및 명칭 변경 등 개편하는 내용임

(안 제3조)에 교육체육국 및 환경녹지국 신설하는 내용임.

(안 제10조)에 도시환경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명칭 변경 내용임.

○ 부서의 소관 국 변경 및 신설하는 내용임

(안 제4조)에 행정지원국 내 교육정책과를 교육체육국으로 이관.

(안 제5조)에 복지동행국에 실뿌리복지과 신설, 기존 장애인사회보장 과를 장애인복지과로, 가족행복지원과를 가족정책과로 명칭 변경.

(안 제6조)에 교육체육국에 평생학습과 신설, 기존 아동보육과를 보 육정책과로, 교육정책과를 교육청소년과로 명칭 변경.

■ 조직개편 전·후 변동 사항

현행	본청	보건소	구의회	동	정원
	6국 2담당관 35 과 155팀	1소 4과 17팀	1사무국 4팀	16동 50팀	1,457명

↓

개편	본청	보건소	구의회	동	정원
	8국 2담당관 37 과 155팀	1소 4과 17팀	1사무국 4팀	16동 50팀	1,457명

■ 조직 변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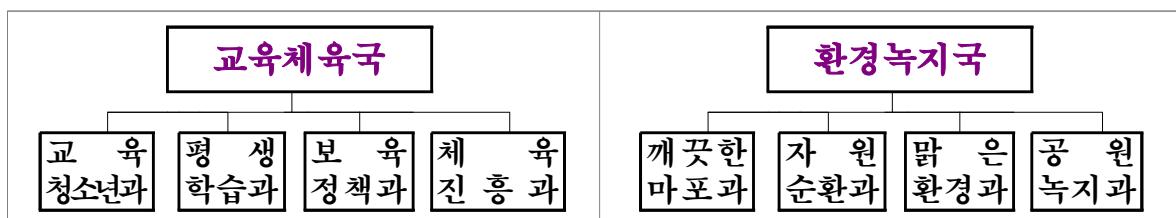
구 분	계	신 설	명칭변경	직제변경	이 동	통폐합
국	3	2	1	-	-	-
과·담당관	16	2	4	2	8	-
팀	25	4	-	-	13	8

■ 신설 사항

국 신설

+ 2국 신설 || 교육체육국 / 환경복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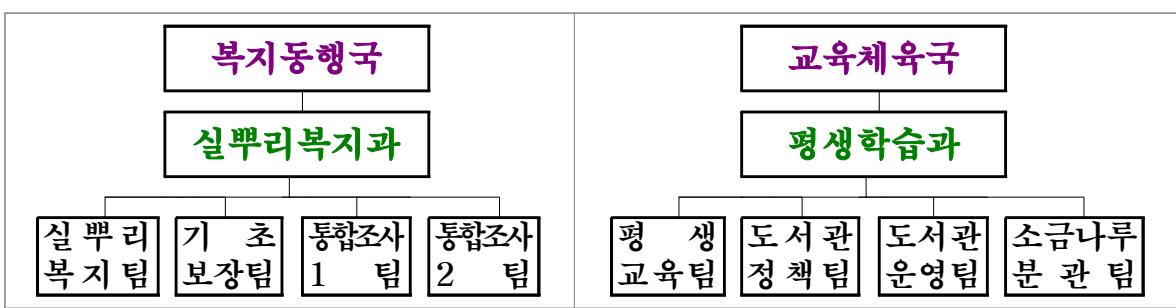
- 구민 맞춤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마포형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마포 조성
- 다양한 환경 문제에 체계적 대응하고 친환경 푸른도시를 조성하여 365일 안전하고 쉼이 있는 마포 조성



과 신설

+ 2과 신설 || 실뿌리복지과 / 평생학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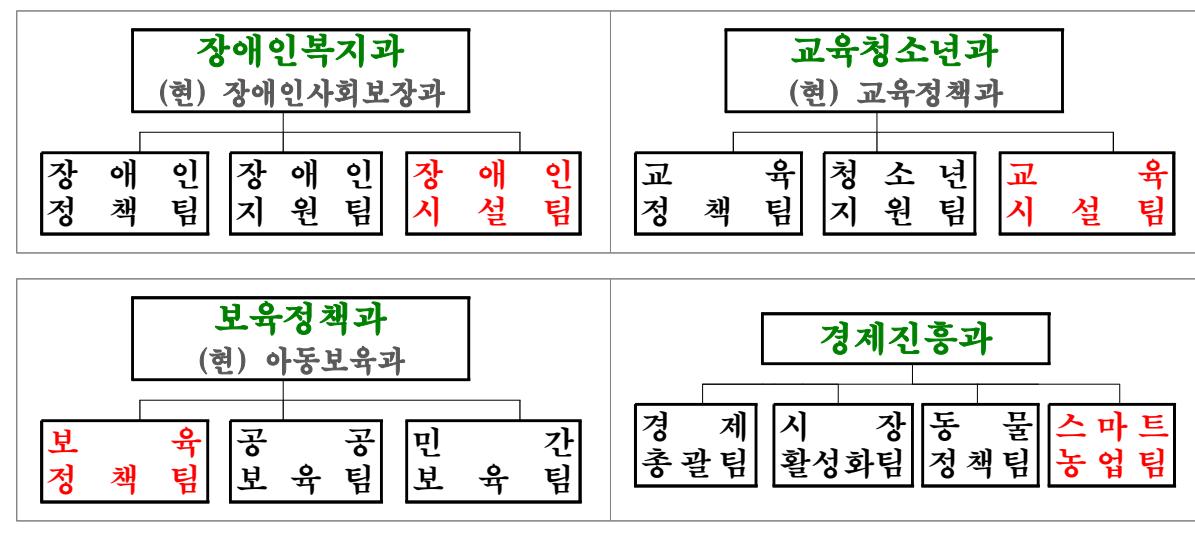
- ‘아이에서 어른까지’, ‘사회적 약자부터 일반 주민까지’ 구민의 삶에 촘촘히 스며드는 마포형 ‘실뿌리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구민이 행복한 ‘동행 마포’ 구현
- 마포형 맞춤 교육환경 조성 및 평생 학습 체계 구축



팀 신설

+ 4팀 신설 || 장애인시설팀 / 교육시설팀 / 보육정책팀 / 스마트농업팀

- 장애인 시설 이용의 편의성 도모로 장애인 인권·권리 보호
- 마포만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영유아의 건전 육성 도모
-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선제적인 기술을 습득·체험하는 기회 제공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



■ 명칭·직제 변경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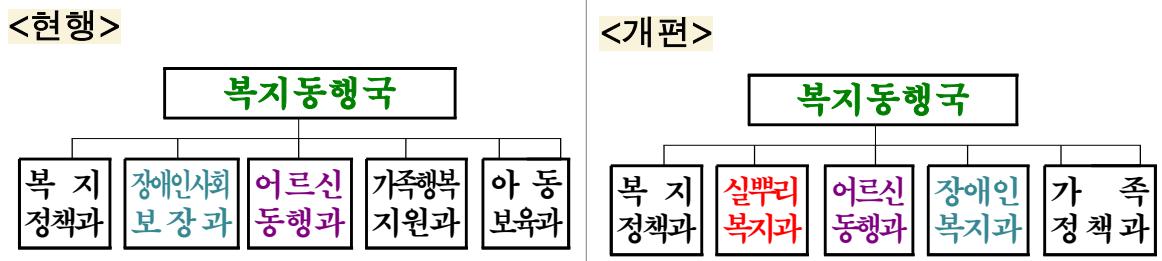
명칭 변경 1국 4과 명칭 변경

- 도시재생사업 등 살기 좋은 마포형 주거 환경 조성 위한 명칭 변경
- 교육 인프라 확충과 청소년 지원 사업의 적극 추진 위한 명칭 변경
- 변화하는 보육행정 수요에 적극적 대응 위한 명칭 변경
- 장애인 복지 수요에 능동적 대응 위한 명칭 변경

현 행			
도	시	환	경
장	애	인	국
애	인	사	회
인	회	보	장
가	족	복	과
족	행	지	과
교	육	정	과
아	동	보	과
보	육	육	

개 편			
도	시	관	리
장	애	인	국
애	인	복	과
인	회	지	과
가	족	정	과
족	행	책	과
교	육	청	과
아	동	소	
보	육	정	

직제 변경 2과 직제 변경 || 장애인사회보장과(현 부서명) ↔ 어르신동행과



■ 부서·팀 이동 내용

부서 이동 8과 이동

부서명	국명		비고
	현행	개편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국		
아동보육과	복지동행국	교육체육국	교육체육국 신설에 따른 이동
체육진흥과	관광경제국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맑은환경과	도시환경국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 신설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이동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교통건설국	도시관리국	국간 부서 조정

팀 이동 13팀 이동

팀명	부서명		비고
	현행	개편	
평생교육팀, 도서관정책팀 도서관운영팀, 소금나루분관팀	교육정책과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 신설로 인한 이동
실뿌리복지팀	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실뿌리복지과 신설로 인한 이동
주거복지팀	어르신동행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
기초보장팀 통합조사1팀 통합조사2팀	장애인사회보장과	실뿌리복지과	실뿌리복지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아동정책팀 아동시설팀	아동보육과	가족정책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
청소년지원팀	가족행복지원과	교육청소년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
생활경제팀	경제진흥과	고용협력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

■ 통·폐합 내용

팀 통·폐합 8팀 → 4팀 통합

부서명	부 서 명		비 고	
	현 행	개 편		
감사담당관	감 사 팀	청 렴 감 사 팀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성격의 과소팀 통·폐합	
	청 렴 인 권 팀			
아동보육과	아 동 정 책 팀	아 동 정 책 팀		
	아 동 시 설 팀			
고용협력과	청 년 지 원 팀	청 년 지 원 팀		
	상생기반지원팀			
예산정책과	미래전략사업팀	미래전략사업팀		
도시계획과	도 시 기 반 팀			

○ 부서 통·폐합 및 이관의 타당성

- 복지동행국 내 실뿌리복지과 신설 및 기존 장애인사회보장과와 가족 행복지원과의 명칭 변경은 정책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소관 업무에 대한 잣은 업무 이동으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점에서 사전에 다각적인 구민 홍보가 필요할 것임.

○ 신설 부서의 업무 조정 및 자원 배분의 효율성

- 교육체육국 및 환경녹지국 신설에 따른 인력 배분, 자원 조달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하며, 기존 부서와의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신설된 부서의 업무를 기존 부서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방안 마련 및 직원 간 원활한 협조 체계 구축이 요구됨.

○ 명칭 변경에 따른 부서 간 혼선 방지 대책

- 복지동행국, 교육체육국, 환경녹지국의 주요 부서의 명칭 변경이 이뤄졌으므로, 내부 행정 처리 절차 및 주민 대응 서비스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 및 교육이 필요함.

- 주민들이 쉽게 변경된 부서를 인지할 수 있도록 대민홍보 및 안내 시스템 정비가 필요함.
- 타 부서로의 업무 이관에 따른 관리 감독 체계의 변화
 - 도시환경국의 주요 환경, 녹지 관련 업무가 환경녹지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환경녹지국과 도시관리국의 업무 범위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 교통건설국 내 부동산정보과가 도시관리국으로 이관됨에 따른 업무 조정 및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함.
- 부서 통폐합 및 인력 배치 효율화
 - 환경녹지국 신설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배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신속한 조직 안정화 유도가 필요함.
 - 실뿌리복지과, 평생학습과 신설에 따른 신규 인력 배치 및 업무 분장 조정에 있어 인력의 효율성을 고려한 배치 필요.
- 업무 이관에 따른 연속성 및 협업 체계 유지
 - 부서 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업무 공백 및 협업 체계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각 부서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 및 업무에 대해 협의체 구성 등 협업 체계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대안 및 개선 방안
 - 주민들에게 부서의 명칭 변경 및 주요 업무 변경 사항을 알릴 수 있는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필요.
 - 부서 간 협업 체계 정비와 명칭 변경에 따른 혼선 방지 대책 마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구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및 기능 재조정을 실시하고, 6국 2담당관 35과 1
소 4과에서 8국 2담당관 37과 1소 4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3조 내용이 2024. 3. 29. 개정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원기준을 완화하고 기구 설치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나 업무량 증가 등에 따라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 바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잡은 조직 개편으로 구민에게 불편함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며, 행정기구 개편 후 사후조치가 늦지 않도록 구청 홈페이지, 청사 주변 안내표시, 공사 현장 표기 등 일선에서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민원 업무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집행을 통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가 실현되는 조직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별표 1]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일부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 독자성 · 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 가능성
 7.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여 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
-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 · 본부[본부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 · 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 · 군 · 자치구(이하 "시 · 군 · 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

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과장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제외한다) 밑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부조직(과는 제외한다)을 둘 수 있다.

1.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 조사 · 분석 · 평가, 행정개선 등에 관한 업무
2. 정책의 홍보, 언론취재의 지원, 보도 내용의 분석 · 대응 등에 관한 업무
3. 감사, 공직기강 확립, 비위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업무
4.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 · 도는 5급 4명 이상, 시 · 군 · 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 · 군 · 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 · 국과 실 · 과 · 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 · 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시 ·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 · 보좌기관인 실 · 국과 실 · 과 · 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실 · 국 및 과 · 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 · 국은 본부 · 단 · 부로, 과 · 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 · 국 또는 과 · 담당관으로 본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 · 군 · 구 본청의 실 · 국이나 과 · 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 ·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군 · 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 · 군 · 구 본청의 실장 · 국장과 과장 · 담당관의 직급과 실 · 과 · 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규칙 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 · 군 · 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실 · 국과 실 · 과 · 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 · 도와 시 · 군 · 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